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2004년 3월 4일 부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4년 3월 4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4. 3. 16) 상정
-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4. 3.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세정과장 최 중 화)

가. 제안이유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됨에 따라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과세전적부심사의 객관적인 심의절차를 위하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운영하던 것을 위원을 10인이내로 확대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8조)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신설)
- 경승용차의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함.(안 제42조제1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세입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150억원 정도로 세수가 세입증대가 예상이 되는지?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늘어나면 외부인사 의 비율은?

답 변 내 용

- 현재 연간 주행세가 135억 정도인데 개정이 되면 약 증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
- 위원수가 10명으로 늘어 나면 외부위원을 6명 이상 으로 하여 과반수가 넘도록 구성할 예정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26호
의결	2004.3.19
년월일	(제111회)

제출년월일 : 2004. 3. 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됨에 따라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객관적인 심의절차를 위하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운영하던 것을 위원을 10인이내로 확대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8조)
- 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신설)
- 다. 경승용차의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함.(안 제42조제1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신고납부"를 각각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수정신고와 동시에"를 "수정신고하고"로 한다.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6인이내의"를 "10인이내의"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동조제1항 단서외의 부분 및 동항 단서중 "신고납부" 를 각각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3호중 "신고납부"를 각각 "신고 및 납부"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신고납부를"을 "신고를"로, "신고납부세액이"를 "납부세액이"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로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3조제2항중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를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1,000분의 115"를 "1,000분의 175"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및 동조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신고함과 동시에"를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 중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동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68호제1항 내지 제4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69조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및 동조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73조제3호 및 동조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74조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신고납부등)"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신고납부 하여야"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신고납부하여야"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수입제조담배"를 "제조담배"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신고 납부하여야"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금액을"을 "신고불성실가산세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 단서외의 부분중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로 하고, 동호 단서중 "신고납부세액이"를 "신고한 세액이"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신고납부한 경우"를 "신고한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80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로서 도시지역안의 임야라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 8.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개발 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u>신고</u>	제7조(수정신고) ① <u>신고</u>
<u>납부</u>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u> 및 납부</u>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u>신고납부</u> 한 후에 과세표준액	1. <u>신고 및 납부</u>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	
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	
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	
나 확정된 경우	
2. <u>신고납부</u> 당시에 있어서 증빙	2. <u>신고 및 납부</u>
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	
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	
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	3
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u>수정신고와 동</u>	<u>수정신고하고</u>
<u>시에</u>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	
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지체없이 환부하여	

야 하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생 략)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②-----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 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 공무 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 촉한다.

1.~5. (생 략)

③~⑥(생략)

제14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삭 제>

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

<신 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0인이내의 ----

1.~5. (현행과 같음)

③~⑥(현행과 같음)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 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 편에 의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

①~④(생 략)

제22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서 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 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 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 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 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는 그 신고일부터 1월)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 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 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 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

로서 납기가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에는 일반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u>②~</u>⑤(현행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음)

Ⅱ22조(<u>신고 및 납부</u>) ①
<u>신고 및 납부</u>

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 ----- 신 고 및 납부----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 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 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 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 및 납부----.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3.-----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 신고 및 납부-----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 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 -----<u>납</u>부세액 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 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 ④----

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 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 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 하여 징수한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 세액을 납부하 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u>신고하지</u>
<u> 아니하였거나</u>
<u>.</u>

⑤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 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 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 한다.

제23조(수정신고납부) ①(생 략) 제23조(수정신고납부) ①(현행과 같음)

(2)-					<u></u>	3 3
<u>신</u> :	그납투	브를	하는	때에는		_
						_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제42조(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제42조(세율) ①-----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 1,000분의 115로 한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43조(<u>신고납부</u>) 주행세 납세의무 제43조(<u>신고 및 납부</u>) ---------- 및 납부--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 <u>신고</u>하고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 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세의 납세지 를 관할하는 시장을 시가 부과 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 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 <u>신고 및 납부</u>---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 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 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 2. 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u>신고납부</u> 하	<u>신고 및 납부</u>
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	
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67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제67조(과세대상) ①
과세대상은 <u>제조담배</u> 로 한다.	<u>담배</u>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제조담</u>	②
<u>배</u> 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u>.</u>
1. 흡연용의 제조담배	1 담배
가.~라. (생 략)	가.~라. (현행과 같음)
2. 씹는 <u>제조담배</u>	2 <u>담배</u>
3. 냄새맡는 <u>제조담배</u>	3 담배
제68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	제68조(납세의무자) ①
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	담배
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	2
부터 반출한 <u>제조담배</u> 에 대하여	<u>담배</u>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3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	
로 <u>제조담배</u> 가 반입되는 때에는	담배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	
I	
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	4
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	담배
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	
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9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	제69조(과세표준)
세표준은 <u>제조담배</u> 의 개비수 또	담배
는 중량으로 한다.	
제70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	제70조(세율) ①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u>제조담배</u>	1 <u>담배</u>
가.~라. (생 략)	가.~라. (현행과 같음)
2. 씹는 <u>제조담배</u> 50그램당 1,040원	2 <u>담배</u>
3. 냄새맡는 <u>제조담배</u> 50그램당	3 담배
65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	②담배
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이하의	
<u>제조담배</u> 인 경우에는 제1항의	담배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72조(<u>제조담배</u> 의 반출신고) 제조	제72조(<u>담배</u> 의 반출신고)
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u>제조담</u>	담배
<u>배</u> 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줄(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 반출ㆍ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제조	제73조(개업ㆍ폐업등의 선	<u> </u> 고)
장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소재지		
(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		
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여		
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		
업을 휴업 도는 폐업하거나 신		
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	3	- <u>담배</u>
의 품종 및 주생산 <u>제조담배</u>		<u>담배</u>
의 품종		
4.・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6. <u>담배</u>	
위치도면		
7.~9. (생 략)	7.~9. (현행과 같음)	
제74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	제74조(기장의무)	

입 판매업자는 <u>제조담배</u> 의 제조,	<u>담배</u>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	
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제75조(<u>신고납부 등</u>) ①제조자는	제75조(<u>신고 및 납부 등</u>) 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에서 반출한 <u>제조담배</u> 에 대한	<u>담배</u>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	
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u>신고납부</u>	<u>신</u> 고하고 납부
<u>하여야</u> 한다.	하여야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2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u>제조담배</u> 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	<u>담배</u>
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에 <u>신고납부하여야</u> 한다. 이 경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u>수입제</u>	<u>수입</u>
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시	<u>담배</u>
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④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	4
의무자는 <u>제조담배</u> 의 품종·수	<u>담배</u>
량ㆍ세율ㆍ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 -----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 제76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제76조(가산세) ①------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단 ----..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 서 신설〉 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 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 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 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 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 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 하여 징수한다. 1.~3. (현행과 같음) 1.~3. (생략) 4.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 4. ----- 신고를 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 <u>부세액이</u> 산출세액에 미달하 <u>액이</u> ----------- <u>신</u>고한 세액이 는 경우. 다만, 신고납부세액 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 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 5. -----

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담배
세액을 허위로 <u>신고납부한 경</u>	신고한 경우.
<u>우</u> .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	
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2
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1.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	1
된 <u>제조담배</u> 를 당해 용도에	<u>담배</u>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	
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3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	
한 <u>제조담배</u> 수량에 대하여 과	<u>담배</u>
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다.	
제77조(납세담보) ① (생 략)	제77조(납세담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	2
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	
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

한 경우 시장은 제조담배의 반 -----담배-----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 출금지를 요구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제조</u> ③------<u>담배</u>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과세표준) ① (생 략) 제80조(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 ②-----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 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7.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중 <신 설> 인 임야로서 도시지역안의 임 야라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 지

<신 설>

8.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

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
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